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4. 6. 29. 10:00

< 6 , 1 >

1.		-----	1
2.		-----	5
3.		-----	7
4.		-----	13
5.		-----	17
6.		-----	19
7. 2004	2	-----	2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6.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6. 12.

다. 의안번호 : 제 2004 - 19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6. 16(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실현과
- 지방화 시대에 주민자치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담당신설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함
(안 제4조 제2항)

1) 기획감사실의 사무추가(혁신분권담당 신설)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 기획·조정

2) 행정과의 사무이관

-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투표 업무, 호적 및 주민등록·인감 ⇒ 자치지원과로 이관

3) 자치지원과의 사무추가

-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 선거 및 투표사무
- 호적 및 주민등록·인감
-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 평생교육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혁신분권 전담기구 신설

-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로 두며, 6급 1명, 7급 1명, 8급이하 1명 등 총 3명의 증원인력은 2004. 3. 18 농정과의 가축위생 담당, 자치지원과의 평생교육담당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총 정원(607명)의 5% 범위내 활용 가능한 보정정원(30명) 중 21명을 활용한바 있고 미사용 9명중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2007. 6. 30일 까지 한시기구임.

나. 행정과 ⇒ 자치지원과로 사무 이관

-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투표 사무, 호적 및 주민등록·인감
- ※ 인력조정
 - 행정과 : 32 ⇒ 30명(△2명), 자치지원과 : 17 ⇒ 19명(증 2명)

다. 자치지원과 사무 명확화

-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라.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

개정안	수정안
<p>제 4 조 (실·과의 설치)① 생략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3. 행정과장 가. 직제·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라. 공무원 보수지급 등 업무 마. 공무원 복무관리 바. 자료관 설치 및 운영 사. 행정 정보화 추진 아. 군민정보화 교육 자.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진흥 운동에 관한 사항 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p> <p>4. 자치지원과장 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 및 주민 복리에 관한 사항 나. 읍·면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 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라.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마. 선거 및 투표사무 바. 호적 및 주민등록·인감 사. 평생학습도시 및 군민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 자. 생활현장 민원처리</p>	<p>제 4 조 (실·과의 설치)① 생략 ②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개정안과 같음</p> <p>3. (삭제)</p> <p>4. (삭제)</p>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현재 행정과장이 자치지원과장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사무는 비중이 크고 업무량이 많은데 비해 인력배분이 적고,

특히, 선거 및 투표사무 등 중요한 사무를 한시정원으로 설치된 부서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 행정과장의 분장사무와 자치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추진 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같이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6.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6. 12.

다. 의안번호 : 제 2004 - 20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6. 16(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실현을 위해 혁신분권담당 기구설치에 따른 군의 정원을 조정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인력증원 및 정원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614명 ⇒ 617명(증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총 계 : 628명 ⇒ 631명(증 3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혁신분권담당 3명 증원(한시정원)

- 2007. 6. 30까지 한시정원으로서 보정정원을 활용

나. 한시정원 존속기한

기구명	정원		존속기한	비고
	한시정원	상계조정 정원		
계	8명	2명		
주민자치지원단	1명(5급)	9급(1명)	2004. 6. 30	2004. 7. 1. 상시정원으로 환원
정보화 추진	3명	-	2004. 6. 30	
민원봉사상수상자	1명(6급)	7급(1명)	결원발생시까지	
혁신분권담당	3명	-	2007. 6. 30	

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6.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6. 12.

다. 의안번호 : 제 2004 - 21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6. 7(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2004. 1. 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주민투표시행과 관련한 군의 책무 (안 제2조)
-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대상 (안 제3조)
- 주민 투표의 대상 (안 제4조)
- 투표청구 주민 수 (안 제5조)
- 서명 요청 방식, 기간 및 절차(안제6조 및 제7조)
- 서명 보정 기간 (안 제11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안 제13조)

-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 (안 제19조)
- 청구인서명부 열람, 주민 투표청구서 등 각종 서식(안 제10조 및 제20조)
- 주민투표공표방법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주민투표의 대상

- 조례안 제4조에서 6가지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중 제3호의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4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에 관한 사항”으로만 정해져 있고, 특정시설의 종류, 규모 또는 사업비 등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할 경우, 차후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가 청구되면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음.

- 또,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주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보다 쉽게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잘못 활용할 개연성은 없는지? 있다면 주민투표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보며,
- 제5호 중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지와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도 포함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나. 투표청구 주민수

- 법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투표청구 주민수가 적정한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법정한도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	1/20	1/15	1/10	1/8	1/5
약 50,000명	2,500명	3,300명	5,000명	6,250명 (조례안)	10,000명

다. 서명기간

-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120일	100일	90일 (조례안)	80일	70일	60일
------	------	--------------	-----	-----	-----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 법상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여부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도 민간인 다수 참여가능토록 되어 있고, 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음으로 주민투표와 관련된 이의신청이나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 등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
- 위원회를 둔다면 위원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마. 서명보정기간

- 청구인서명부상 주민투표청구권자수가 모자랄 경우, 서명을 더 받아 올수 있도록 보정기간을 조례로 정해야 하며,
- 조례안에는 10일로 정해놓고 있는데 동 기간이 적정한 기간인지 검토가 필요함

바. 투표운동의 제한

① 야간 호별방문 금지

o 일출몰 시간(거창기준)

구 분	동절기 (1월1일기준)	하절기 (6월5일기준)
일 출	07:38	05:13
일 몰	17:26	19:41

- o 야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하는게 적절한 것인지, 동·하절기별 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정하되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② 야간 옥외집회 금지

- o 옥외 공개장소에서 연설회, 대담, 토론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후(밤) 10까지이며, 또, 다음날 7시부터 집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o 또, 휴대용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밤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읽는 공원”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또, APT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에 확성기를 가지고 연설을 한다면 주민들에게 소음 인해 피해를 기치지 아니하는 것인지? 피해가 발생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간대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사. 자구 수정

구 분	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조 례 ⇒	거창군주민투표조례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조 례 ⇒	거창군주민투표조례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u>8분의 1</u> 이상으로 한다.</p>	<p>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u>10분의 1</u> 이상으로 한다.</p>
<p>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u>90일</u> 이내로 한다.</p>	<p>제7조(서명요청기간) <u>60일</u> 이내로 한다.</p>
<p>제14조(심의회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u></p>	<p>제14조(심의회회의 구성)①<u>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u></p>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략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 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u>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u>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① 제정안과 같음 ②..... 수 없다. <u>(단서삭제)</u>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중 “조례”	거창군주민투표조례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중 “조례”	거창군주민투표조례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본 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례로서
-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이상에서 1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반면, 주민으로부터 서명요청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고 또 야간 옥외집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휴대용확성기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까지만 옥외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6.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4 - 22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6. 16(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의2)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 함(안 제16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 - 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비밀엄수 조항 신설

-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 청렴, 비밀엄수, 품위유지,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의무 중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나. 상위법령 개정 등

-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안은 2004. 6. 15. 국무회의를 통과했음
- 동절기(11월) 근무시간 연장 문제와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 단축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차후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개정 추이를 보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p><삭제></p>
<p>제13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삭제></p> <p>② 개정안과 같음</p>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6월미만</td><td>3</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6</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9</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2</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4</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7</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0</td></tr> <tr><td>6년이상</td><td>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제18조(연가일수) ① <삭제>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생략 ②(경과조치)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u>있으며</u> ,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경과조치)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u>있다</u> .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을 두고 좀더 생각할 부분이 많아 우선 7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토요일휴무제 외에 비밀엄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연가일수 단축부분과 이와 관련된 부칙을 삭제·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6. 7.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6. 12.

다. 의안번호 : 제 2004 - 23호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6. 16(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매 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 시기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함(안 제3조)
-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내로 변경함(안 제8조)
- 장학금 지급의 정지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상위 조례의 개정

- 장학금 재원의 50%를 지원하는 상위 조례인 경상남도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는 2004. 6. 3 제3044호로 경상남도지사가 개정·공포한 내용과 동일

나.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거창군 평생학습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6.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4.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4 - 24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6. 16(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국민들로부터 평생학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2001. 1. 29. 법률 제6400호)이 제정되었고, 2003년 9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우리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들을 계획·강구 및 추진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거창군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평생학습센터 소속하에 거창군평생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9조 내지 제16조를 조례 제정의 근거로 하고 있는바, 동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등과 조례안의 거창군 평생학습센터나 거창군평생교육원과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

나.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 별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없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
- 협의회를 둔다면 협의회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 조례의 내용 및 체계 등

-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봄.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 6. 7.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4. 6. 12.
- 다. 의안번호 : 제 2004 - 27호
- 라. 상정 및 심사일자 : 2004. 6. 16(총무위원회)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과학영농을 위한 농기계 보관 장소인 격납고 증축
- 청정지역의 이미지 쇄신과 홍보를 위한 대형 광고탑 설치로 산고수장의 자연환경을 대내외적 파급
- 대평리 삼거리~국농소 간 교통사고 상존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농로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요인이 발생되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예정금액	비고
취득	건물 및 용익물권	거창읍 대평리 1362	건물	333	170,000	'04년 본예산
		위치 미지정	지상권	1식	400,000	'04년1회추경

구분	재산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예정금액	비고
취득	건물 및 용익물권	마리면 고학리 1130-5	건물	132	150,000	'04년1회추경
		주상면 거거리 870-10	건물	132	150,000	상동
		대평리 918-2 외 52필지	답	11,008	400,000	상동
		송정리 산42-14번지	임야	3,306	644	상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보관용 격납고 증축

- 333m²를 증축하기 위해 170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기 반영
- 현재 '99. 7. 30 건립한 경량철골조 60m²의 창고를 헐고 그 장소에 증축

나. 대형 광고탑(공작물) 설치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에는 공작물의 설치도 포함
- 우리 거창군을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변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시책건의를 받아들여 추진

다. 보건진료소(2개소) 신축

- 마리면 고학보건진료소와 주상면 거기보건진료소 증축을 위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각각 40백만원씩 기 반영했으나
- 기존 건축물이 노후·협소하여 기존 건축물을 헐고 면적을 늘려 신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선반영 후 부족예산 개소당 110백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

진료소명	건축면적	건축년도	건축비
고학보건진료소	72.4m ²	1985년	10,350천원
거기보건진료소	66.1m ²	1983년	9,300천원

라. 대평리 농로개설

- 대평리 거창읍 진입로변에 진입로조성공사 시행으로 주변 농경지 농작물 경작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대로에 갓길을 만들어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사전예방
- L=1,930m, B=5m를 개설하는데 약 400백만원이 소요예상됨
- 총 구간 중 약 1,200m는 도시계획도로(대로3-1)이므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군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법에 의한 국도에 해당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구역으로 결정해야 하는 곳에 해당되어 부득이 토지수용이 가능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매매의 방식에 의거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마.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

- 군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계획이 2003년도 수립되어, 조례 제정,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명시이월사업)
- 2004. 4. 30. 제108회 임시회에서 병원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바 있음.
- 건축연면적 : 991m², 사업비 : 1,283백만원
- 1건당 1억원이상 이거나 1,000m²이상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병원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에서 거창읍 송정리 산 42-14번지 임야 3,306m²를 기부채납 해 왔음.

- 자연녹지지역내 임야로서 거창군계획조례상 의료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며,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봄.
- 다만 기부채납 토지에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진입도로가 개설 되어 있는지? 지상물건에 대한 권리주장자가 별도 없는지?
또, 치매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설치해는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있는바, 동 지역에는 주민반대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생략)

5. 토론요지(생략)

6. 수정안 요지(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생략)